

의안번호	2202602
의 퇴 인	구자근 의원
회 답 일	2024. 8. 21.
추계번호	24A267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송전 설비를 포함한다)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발전소등”이라 한다)를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안 제12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소 등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산 설비”의 사용 권고와 재정지원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하반기에 도입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장에서 비가격 평가 요소로서 산업·경제효과(국내경제·공급망 기여 효과)를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12.)에는 “국산 설비”와 관련하여 초대형 풍력 터빈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 기술 개발, 국산기자재 사용 및 중소 중견기업 동반진출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한 신재생 정책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12.)의 “국산 설비”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신재생 원별 유망분야 R&D 지원 강화	(풍력) 초대형 풍력 터빈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 기술 개발 - 초대형 블레이드(길이 100m, 8MW급), 카본 복합재 부품,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기 및 제어시스템 등 핵심부품 국산화 * 터빈 : ('19) 5.5 → ('30) 12~20MW / O&M 비용(연) : '30년까지 30% 절감
유망 신재생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로 해외진출 활로 개척	국산기자재 사용 및 중소 중견기업 동반진출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한 신재생 정책펀드 조성 검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